

보도시점 2024. 6. 4.(화) 17:00
(2024. 6. 5.(수) 조간)

배포 2024. 6. 4.(화) 09:00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 '08년 연구개발 예타 도입 이후 16년 만의 폐지로, 신속한 연구개발 착수 기대
- 맞춤형 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기획 보완 및 재정건전성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이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99년에 도입되었으며, R&D 분야는 '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다. '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4.25.)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먼저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D 예타 제도 개선방안(22.9.)에서 상향됐던 예타 기준(500억원→1,000억원)을 고려

1천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 ①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 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책임자	팀 장	김태규 (044-202-6940)
		담당자	사무관	김홍주 (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5-73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410)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15-5418)



I. 추진 배경

- R&D 투자의 적시성·신속성 회복을 위해 2024 국가재정전략 회의(5.17.)에서 발표한 R&D 예타 제도 폐지의 후속방안 마련

II.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원칙적인 폐지를 추진하고 R&D 신속성 강화
- (보완방향)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부실화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별도 보완절차 마련

① (연구형R&D)신속하면서도 건전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형R&D는 추가 소요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되, 기획완성도 제고 및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필수항목* 중심의 전문검토 실시(10~3월)
- * ①필요성 및 시급성, ②사업규모 적정성, ③추진내용 구체성, ④유사중복 여부 등

② (시설장비/체계개발)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체계 도입

- 시설장비/체계개발은 선행기술개발을 분리*하고 사업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검증 제도 도입
- * 대형 연구시설구축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연구형R&D로 先 추진

사업유형	특징	제도 적용방안	검증결과
장비도입 등	선행기술 불필요, 관리단순	1단계 심사	사업추진여부 결정 (예산반영)
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	선행기술 필요, 관리복잡	2단계 심사	1단계 : 구축여부 결정 2단계 : 사업추진여부 결정(예산반영)

※ 연구동 건립 등 일반건축사업은 기재부 일반 예타 적용

③ 관리 및 이행방안

- (한도내 편성) 부처는 예산요구 시 모든 R&D사업을 예외없이 지출 한도 내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 (법령개정) R&D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심사지침 제정 등 신속 추진
- (과도기 운영)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 전까지는 현행 법령(예타) 체제 내에서 예타면제, 신속조사 확대 등을 통한 신속 착수 지원
- (계속사업 확대) 기존 소규모 한시사업은 통합조정을 통해 프로그램형 사업화하고, 일몰제는 폐지하여 계속사업으로 전환